

공정거래위원회

우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 전화 (02) 503-9125 / 전송(02) 507-4087
기업집단과 과장 김 원 준 사무관 김 근 성

문서번호 기업42310-261

시행일자 2002.09.13 (5)

공개여부 공개

수신 참여연대

참조

제목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의 해외주식에탁증서 발행관련의혹 조사요청에 대한 건

1. 귀 기관이 요청하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의 ADR 발행 관련 의혹 조사요청 (경제-2002-0807, 2002.8.29.)관련입니다.

2. 저희 위원회에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회사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사실에 대하여 시정조치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위반에 해당되는 주식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해 회사가 입증하여야 할 사항으로 처분은 법제7조의2(주식의 취득 및 소유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처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결권행사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당해 회사가 법위반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중 처분한 것으로 입증한 주식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주식금액에 대하여서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 저희 위원회에서는 에스케이(주)가 2002.4.1. 법제10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에스케이(주)가 법위반금액에 해당되는 주식중 처분하였음을 입증한 주식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주식금액에 대하여 의결권행사금지를 명한 것입니다.

4. 에스케이(주)는 모멘타를 통하여 매각한 주식이 실질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 매각부분을 실질적인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5. 향후 에스케이측에서 위 모멘타를 통한 주식매각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처분에 관련된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자료를 확인하여 처분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6. 참고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에스케이(주)에 대하여 특정주식이 아닌 범위 반금액에 해당되는 주식의 의결권행사금지를 명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 정 거 래 위 원 회

